학칙 중 개정(안)

1. 개정이유

- 관련근거 : 기획 2016-154(2016.4.8.) 2016학년도 구조조정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및 교무위원회 상정의 건
- 위 관련근거에 의거 [별표 1] 설치학과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부칙상의 경과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별표 1]

설치 학부, 계열(전공), 학과, 수업년한, 입학정원

학부 분류	모집단위(계열,학과명)	수업 연한	2016학년도 입학정원 (주간)	학부 분류	모집단위(계열,학과명)	수업 연한	2017학년도 입학정원 (주간)
간호	간호학과	4년	200	간호	간호학과	4년	200
소계	1학과		200	소계	1학과		200
보건·생명과학	임상병리과	3년	40	보건·생명과학	임상병리과	3년	40
	물리치료과	3년	30		물리치료과	3년	30
	의료정보과	3년	40		의료정보과	3년	40
	피부보건과	2년	45		피부보건과	2년	45
	애완동물과	2년	**45**		애완동물과	2년	**49**
	과학수사과	2년	40		과학수사과	2년	40
	보건복지과	2년	45		보건복지과	2년	45
	치위생과	3년	30		치위생과	3년	30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3년	40		의료관광코디네이션과	3년	40
	식품영양과	2년	40		식품영양과	2년	40
	뷰티디자인계열 -헤어디자인전공 -메이크업·네일디자인전공	2년	80		뷰티디자인계열 -헤어디자인전공 -메이크업·네일디자인전공	2년	80
	패션·슈즈디자인과	2년	40		패션·슈즈디자인과	2년	40
	식품조리계열 -조리전공 -푸드스타일링전공	2년	80		식품조리계열 -조리전공 -푸드스타일링전공	2년	80
소계	2계열 4전공 11학과		**595**	소계	2계열 4전공 11학과		**599**
첨단공학	컴퓨터공학&그래픽과	2년	40	첨단공학	컴퓨터공학&그래픽과	2년	40
	컴퓨터정보&스마트폰과	2년	40		컴퓨터정보&스마트폰과	2년	40
	도시건설과	2년	50		도시건설과	2년	50
	도시환경조경과	2년	40		도시환경조경과	2년	40
	소방안전관리과	2년	60		소방안전관리과	2년	60
	의료기기과	2년	40		의료기기과	2년	40
	실내건축디자인과	2년	40		실내건축디자인과	2년	40
소계	7학과		310	소계	7학과		310
사회·교육학	호텔외식관광계열 -외식음료전공 -호텔관광전공	2년	80	사회·교육학	호텔외식관광계열 -외식음료전공 -호텔관광전공	2년	80
	샵마스터·마케팅과	2년	40		샵마스터·마케팅과	2년	40
	물류유통경영과	2년	40		물류유통경영과	2년	40
	금융부동산행정과	2년	40		금융부동산행정과	2년	40
	세무회계과	2년	40		세무회계과	2년	40
	사회복지과	2년	80		사회복지과	2년	80
	경찰경호과	2년	80		경찰경호과	2년	80
	유아교육과	3년	64		유아교육과	3년	64
	아동보육과	2년	40		아동보육과	2년	40
	군사과	2년	80		군사과	2년	80
소계	1계열 2전공 9학과		584	소계	1계열 2전공 9학과		584

학부 분류	모집단위(계열,학과명)	수업 연한	2016학년도 입학정원 (주간)	학부 분류	모집단위(계열,학과명)	수업 연한	2017학년도 입학정원 (주간)
예 체능	스포츠건강관리과	2년	45	예 체능	스포츠건강관리과	2년	45
	광고홍보디자인과	2년	40		광고홍보디자인과	2년	40
	음악계열 **-클래식전공** **-실용음악전공**	**2년**	**40**		**<삭 제>**		
소계	**1계열 2전공 2학과**		**125**	소계	**2학과**		**85**
합계	**4계열 8전공** 30학과		**1,814**	합계	**3계열 6전공** 30학과		**1,778**

현 행	개 정(안)
	부 칙 ①(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의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본 학칙 개정 당시 폐지되는 모집단위(음악계열)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학적은 해당학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 전 학칙에 따른다. 다만, 폐지된 학과에 소속된 학생 중 휴학 및 복학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계열 및 학과(단, 4년제와 3년제는 제외)로 복학하는 것은 허가하되, 취득학점 및 졸업학점의 인정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